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87 발의연월일: 2025. 4. 24.

발 의 자:노종면・김동아・박상혁

서영석 • 이훈기 • 정을호

정동영 · 유동수 · 정일영

허종식 • 이정헌 • 허성무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음. 국회의 의결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추천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최근 내란행위 진상규명,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등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의뢰를 실시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특별검사 후보자조차 선정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상설특검의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임.

이에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의뢰를 2일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고, 대통령이 3일 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명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3조).

법률 제 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면"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일 이내 대통령의 추천 의뢰가 없을 경우 의뢰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대통령이 기한 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우선순위 후보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① 제2	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①
조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	
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	
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u>다만, 2일 이내 대통령의</u>
	추천 의뢰가 없을 경우 의뢰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②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2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5	
일 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	
자를 <u>서면</u> 으로 대통령에게 추천	<u>우선순위를 정하여 서면</u>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은 제2항의 추천을 받	3
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	
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u>다만, 대통령이</u>
	기한 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특
	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 ************************************

한 2명의 후보자 중 우선순위후보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